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8

보 건 복 지 부

발 간 사

인구의 고령화는 21세기 세계적인 이슈의 하나입니다. 2002년 현재 지구상에 60세 이상 노인이 6억명이나 2050년이면 20억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2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유엔에서는 각국 정부와 함께 2002.4.8-4.12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를 개최하여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행동계획은 20년전 제1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행동계획을 대체하여 향후 각 국가가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하는데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행동권고 부분에서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이렇게 3가지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그 아래 18개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행동지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아니고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각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이 자료가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은 물론, 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계, 기업, 언론과 관련 종사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관련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8월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

일 러 두 기(활용방법)

- 정치선언문은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과 동시에 채택되었으며 동 계획을 요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동계획은 서문, 행동을 위한 권고, 이행과 후속조치,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 서문(15문항)은 세계적인 고령화현상에 대한 기술과 행동계획의 목적과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 행동을 위한 권고(98문항)는 각 분야별 현황을 설명하는 문항과 행동을 위한 문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 상 목표문항에 목표를 기술 후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열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관심분야 목표 조항을 찾으면 행동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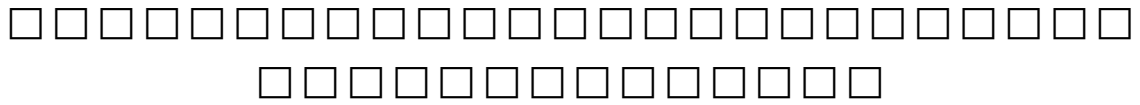
 - 이행과 후속조치(29문항)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정은 추후 유엔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 행동계획의 명칭이 당초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이었으나, 회의 마지막 날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행동계획의 공식명칭만 변경되고 관련 각 문항에는 그 명칭이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으로 되어 있음.

□ 이 자료의 **번역원문**은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 결과보고서(A/CONF.197/9)이며,
UN Programme on Ageing sit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un.org/esa/socdev/ageing/waa/index.html>)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12.16 유엔총회(결의 46/91)에서 채택되었으며,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5개항 아래에 1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요약



I. 서문 : 1항 ~ 15항

II. 행동권고 : 16항 ~ 113항

A. 노인과 발전 (16항 ~ 56항): 8개 과제

- ①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19 ~ 22)
- ②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23 ~ 28)
- ③ 농촌개발, 이주와 도시화(29 ~ 34)
- ④ 지식.교육.훈련에의 접근(35 ~ 41)
- ⑤ 세대간 연대(42 ~ 44)
- ⑥ 빈곤해소(46 ~ 48)
- ⑦ 소득보장(49 ~ 53)
- ⑧ 긴급상황하의 노인보호(54 ~ 56)

B.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57항 ~ 90항): 6개 과제

- ①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61 ~ 68)
- ②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69 ~ 77)
- ③ 노인과 HIV/AIDS (78 ~ 81)
- ④ 보호제공자와 보건전문가 훈련 (82 ~ 83)
- ⑤ 노인과 정신건강 (84 ~ 86)

⑥ 노인과 장애 (87 ~ 90)

C.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91항 ~ 113항): 4개 과제

① 주택과 주거환경 (91 ~ 100)

② 보호와 보호제공자 지원 (101 ~ 106)

③ 노인 유기, 학대와 폭력 (107 ~ 111)

④ 노인 이미지 개선 (112 ~ 113)

Ⅲ. 이행과 후속조치 : 114항 ~ 132항

① 국가적 행동 (116 ~ 119)

② 국제적 행동 (120 ~ 128)

③ 조사연구 (129 ~ 130)

④ 국제적인 모니터링.검토.개정 (131 ~ 132)

목 차

발 간 사.....	2
일러두기(활용방법).....	3
행동계획 요약.....	4
행동계획 수립 경과.....	1
정치 선언문(제1항 ~ 제19항).....	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8
I. 서문(제1항 ~ 제15항).....	8
II. 행동을 위한 권고(제16항 ~ 제113항).....	14
A. 주요 방향 1: 노인과 발전(제16항 ~ 제56항).....	14
과제 1: 사회와 발전에 적극 참여(제19항 ~ 제22항).....	15
목표 1: 노인의 사회·문화·경제·정치적 기여인식(제21항).....	16
목표 2: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제22항).....	17
과제 2: 근로와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제23항 ~ 제28항).....	17
목표 1: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 부여(제28항).....	19
과제 3: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제29항 ~ 제34항).....	21
목표 1: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하부구조 개선(제32항).....	22
목표 2: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외 완화(제33항).....	23

목표 3: 노인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제34항)	24
과제 4: 지식,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제35항 ~ 제41항)	25
목표 1: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기회 균등(제40항) ..	26
목표 2: 모든 연령층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의 완전한 이용(제41항)	27
과제 5: 세대간 연대성(제42항 ~ 제44항)	28
목표 1: 세대간 평등과 상호이익을 통한 연대성 강화(제44항)	28
과제 6: 빈곤 해소(제46항 ~ 제48항)	29
목표 1: 노인들의 빈곤 감소(제48항)	30
과제 7: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제47항 ~ 제53항)	31
목표 1: 기본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증진(제52항)	32
목표 2: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소득 제공(제53항)	33
과제 8: 긴급상황	33
목표 1: 자연재해등의 경우 식량, 피난처, 의료 등 서비스 접근(제55항)	34

B. 주요 방향 2: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제57항 ~ 제90항)

과제 1: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제62항 ~ 제68항)	38
목표 1: 질병의 위험요소 감축(제66항)	39
목표 2: 노인질병 예방정책 개발(제67항)	40
목표 3: 식품 및 적절한 영양에 대한 모든 노인들의 접근(제68항)	41
과제 2: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제69항 ~ 제77항)	42
목표 1: 평등한 의료접근을 위한 불평등 철폐(제74항)	44
목표 2: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 및 노인참여(제75항)	45

목표 3: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발(제76항)	45
목표 4: 노인의 개발참여와 장기요양치료 서비스 강화(제77항).....	46
과제 3: 노인과 에이즈(제78항 ~ 제81항).....	47
목표 1: 감염노인을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강화(제79항).....	47
목표 2: 에이즈 감염노인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 훈련, 치료 지원제공(제80항).....	47
목표 3: 아동 보호자로서 노인의 기여증진(제81항).....	48
과제 4: 보호 제공자와 보건전문가의 훈련(제82항 ~ 제83항)	49
목표 1: 보건전문가를 위한 정보와 훈련 제공(제83항)	49
과제 5: 노인들의 정신건강 욕구(제84항 ~ 제86항)	50
목표 1: 종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개발(제86항).....	50
과제 6: 노인과 장애(제87항 ~ 제90항)	51
목표 1: 장애인노인의 기능적 능력유지 및 참여 증진(제90항).....	52
C. 주요 방향 3: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제91항 ~ 제113항).....	53
과제 1: 주택과 주거환경(제95항 ~ 제100항)	55
목표 1: 주택선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노화증진(제98항).....	56
목표 2: 독립적 주거향상을 위한 주택과 환경 설계증진(제99항).....	57
목표 3: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 증진(제100항).....	58
과제 2: 보호 및 보호제공자 지원(제101항 ~ 제106항)	58
목표 1: 노인 보호와 서비스 제공 및 보호제공자 지원(제105항)	60
목표 2: 노인의 보호자 역할 지원(제106항)	61
과제 3: 유기, 학대 및 폭력(제107항 ~ 제111항).....	61

목표 1: 노인에 대한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제110항)	62
목표 2: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제111항).....	63
과제 4: 노화의 이미지(제112항 ~ 제113항).....	64
목표 1: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공헌에 대한 공중의 인식 향상(제113항).....	64
III. 이행과 후속조치(제114항 ~ 제132항)	65
국가적 행동(제116항 ~ 119항)	66
국제적인 행동(제120항 ~ 128항)	67
조사연구(제129항 ~ 제130항).....	70
세계적인 모니터링, 검토 및 개정(제131항 ~ 132항).....	70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72
 영어 원문	
1. 정치선언문	
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3.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행동계획 수립경과

1. 제1차 세계고령화회의 개최: '82.7.26 ~ 8.6(12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채택
 - 아국대표: 보건사회부장관 등 6명 참가
 - 대표단 활동내용: 기조연설, 77그룹 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참여

2. 2000.5월 UN 총회결의: 1차 회의 개최 20년이 되는 2002년에 2차 세계 고령화회의를 스페인에서 2002. 4월에 개최(54/262)
 - 1차 회의 20년 결과 검토
 - 국제행동계획의 수정과 고령화 장기전략의 수립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주기적인 이행검토 실시

3. 세계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개최: 2001.2 ~ 2002.2간 5차례
 - 유엔사무국의 '노인학대' 보고서 제출 결의; 2002.2월 준비회의시 제출
 - 유엔고령화기금(개도국과 최빈국 참여지원과 홍보활동) 설치, 의사규칙, NGO의 참여 및 참여절차 결의
 - 세계대회에 참여할 NGO 123개 승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포함
 -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 의제 및 조직 안 의결
 - 결과문서(정치선언문 및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 초안 논의

4.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 개최: 2002.4.8-4.12, 스페인 마드리드

- 정치선언문 및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채택
- 아국대표: 보건복지부 이경호차관 등 8명 참가
- 대표단 활동내용: 기조연설, 부의장국으로서 수석대표가 본회의 주재, 각종 비공식 및 공식 회의 논의과정 참여, NGO대표 3명 부속행사 참여, 노인복지 및 2002 Worldcup 홍보자료 배포 등

정 치 선 언 문

(Political Declaration)

제1항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 참가한 우리 각국의 정부대표들은 21세기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적인 국제적인 모든 차원에서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이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제2항

우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늘어난 평균수명이 커다란 인류업적 중의 하나임을 축하한다. 우리는 세계가 전대미문의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6억명에서 20억명 정도로 증가하고, 그 비율이 10%에서 21%로 증가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노인인구가 향후 50년 사이에 4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크고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사회가 많은 도전을 받게 할 것이며, 특히 노인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능력을 현실화시키도록 할 것이다.

제3항

우리는 우리의 국가원수와 정부가 중요한 유엔 회의, 정상회의, 후속 과정 및 새천년선언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약속들을 반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1982년 유엔총회가 승인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권고와 1991년 유엔 총회가 승인하여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및 존엄 분야에 지침을 제공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재확인한다.

제4항

우리는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강화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동가들 사이에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제5항

우리는 개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여성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는 연령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든 생활에서 자아실현, 건강, 안전 및 활동적인 참여를 즐겨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노인들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을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제6항

현대세계는 초유의 부와 기술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남성과 여성들이 더 나은 건강상태로 그리고 더 현실화된 복지와 함께 노년을 맞이하게 하였으며, 사회에서 노인들의 완전한 포함과 참여를 추구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와 사회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삶의 기회와 질을 변화시키고,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리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된 행동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하나의 업적으로 받아드려지면, 높은 연령층의 기술·경험·자원에 대한 의존은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완전히 통합된 인간적인 사회로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제7항

동시에, 경제체제 전환국가들은 물론 최빈곤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이 세계경제에 통합하고 완전히 참여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장애들이 있다. 만약 사회경제적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가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 특히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인들은 세계경제에서 뒤쳐지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빈곤해소 전략과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 완전참여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개발의제에 고령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제8항

우리는 특정한 정책들이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령화를 사회경제적 전략, 정책 및 행동에 효과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노인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경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남녀 평등적 시각을 주류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제9항

우리는 무력분쟁과 외국점령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도울 것을 약속한다.

제10항

노인들의 잠재능력은 미래발전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기초이다. 노인들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 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의 잠재능력은 사회를 점차적으로 노인들의 기술, 경험 및 지혜에 의존하게 만든다.

제11항

우리는 인구 고령화와 연령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 특히 국가적 국제적인 통계기구들에 의하여 개발된 신뢰성 있고 조화 있는 지표들에 근거한- 는 고령화 관련 정책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12항

노인들의 기대와 사회의 경제적 요구는 노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인들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이 일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완전한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들을 위하여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항

우리는 노인들의 특수한 욕구를 감안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증진하며 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책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가족과 지역사회는 물론 민간단체, 민간분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노인들 자신, 노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14항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즐길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달성이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보건분야 이외에 많은 여타의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와 서비스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일반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욕구는 특히 보호와 치료, 건전한 생활습관 및 지원적 환경 장려 등 정책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노인들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독립, 접근성, 일할 기회를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노인들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며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제15항

우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비공식 보호를 제공하는데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노인단체 및 지역사회 조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제16항

우리는 특히 노인과 청년들의 특수한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대간 연대성과 세대간 협력을 강화하며, 세대간의 상호반응적인 관계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17항

정부는 고령화 문제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 노인들 자신과 노인단체, 민간단체와 민간분야를 포함한 여타 시민사회분야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은 많은 이해관계자 - 전문직업 단체, 기업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연구기관, 학계, 종교단체, 언론 - 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한다.

제18항

우리는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후속조치.국가적 모니터링에 있어서 정부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와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사회.인구학적 조건들의 차이를 고려하며 정부들을 돕는데 지역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기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19항

우리는 모든 국가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모든 세대의 평등이라는 공통의 이상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 서문

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이 발전하면서 과거 20년간 고령화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 왔다. 노인을 위한 인권과 관련하여 1991년에 만들어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및 존엄과 같은 영역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2. 20세기에 장수와 관련한 혁명이 이루어졌다. 평균수명은 1950년 이후 20세가 늘어 66세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10년이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승리와 21세기 전반기의 빠른 인구증가는 2000년 6억명이던 60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에 20억명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의 노인인구의 비율도 1998년 10%에서 2025년에는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향후 50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8년 8%에서 2025년 15%로 증가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그 비율이 단지 같은 기간동안 5%에서 6%로 증가하였지만 2050년이 되면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연되어 있는 에이즈와의 투쟁과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위 수준의 절반정도가 될 것이다. 유럽과 북미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8년에서 2025년 사이에 각각 20%에서 28%로, 16%에서 26%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개인,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적인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류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심리, 정신적인 모든 분야가 발전될 것이다.

3. 현재 진행중인 현저한 인구변화는 금세기 중반이면 세계인구에서 노인층과 청년층이 동일한 비율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00년과 2050년 사이에 두배가 되어 10%에서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아동인구 비율은 1/3이 감소되어 30%에서 21%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가의 경우 노인인구 수는 이미 아동의 수를 넘어섰고,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2050년이면 노인 수가 아동 수의 두 배를 넘을 것이다. 선진국은 71명의 노인 성비(100명의 여성 대비 남성 수)가 7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의 남녀간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선진국과 같은 정도로 남성노인보다 많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성비가 88이며 세기 중반이면 약 8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21세기 전반에 빠르게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비율이 2050년이면 8%에서 19%로 증가하는 반면, 아동비율은 33%에서 22%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커다란 자원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실업 및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여타 중요한 인구학적 차이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노인들의 다수가 오늘날에도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전망에 의하면 2025년까지 선진국 인구의 82%가 도시지역에 살게 될 것이나, 개발도상국은 인구의 절반이하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다. 고령화와 도시화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구전망에 따르면 향후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 더 많은 노인인구가 있게 될 것이다.

6. 또한, 노인이 살고 있는 가구의 종류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노인의 많은 비율이 다세대 가구에 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정책방향이 동일해서는 안될 것임을 암시한다.

7. 노인인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은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 노인들이다. 2000년 후기고령층 노인은 7천만 명이었으나

다음 50년간에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을 수적으로 압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곳에서 여성노인의 상황이 정책 행동을 위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확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령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사업.입법에서 남녀 성 평등적 관점의 통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세계적인 고령화 진전과정을 더 큰 발전의 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관련 정책은 주요 유엔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최근에 채택된 세계적인 조치들과 기본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더 광범위한 삶의 과정과 사회적 견해를 담고 있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0.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21세기 고령화의 엄청난 잠재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태도,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그들의 사회에 참여를 계속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의 기초는 인생에서 일찍이 닦여지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계획은 정책결정자들이 개인과 인구의 고령화에 관련된 중요한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고령화의 본질과 그것이 제기하는 도전의 공통적인 모습은 인식되었으며, 특정한 권고들은 각 국가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입안되었다. 행동계획은 세계화 과정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전과 변천의 많은 상이한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11. 1999년 세계노인의 해 주제이었던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는 개인의 평생개발, 다세대간 관계, 인구고령화와 발전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노인의 현황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담고 있다. 세계노인의 해는 고령화 문제를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회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식, 조사연구 및 정책행동을 진전시키는 것을 도왔다.

12. 중요한 유엔 회의, 정상회의, 특별총회 그리고 후속검토과정들은 모든 사람의 경제·사회적 여건 향상을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목적, 목표와 약속들을 수립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노인들이 발전과정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하게 발전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목표와 약속들과 관련하여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담겨 있는 중심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b)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세우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노후의 달성

(c)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하기

(d) 노인들이 단일한 동질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후에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과 참여와 같은 것은 물론, 전 생애를 통한 개인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를 위한 기회 제공

(e)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f) 특히,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노인의 성평등 달성

(g) 사회개발을 위하여 가정, 세대간 상호의존,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h) 예방적 보건의료와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i) 국제행동계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및 노인들 사이의 협력관계 촉진

(j)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기술의 가능성을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k)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에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 노인들이 완전히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모든 세대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발전에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령에 근거한 차별과 싸우고 노인들의 존엄을 증진하는 것은 노인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확보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과 보호는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에 도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세대간 상호부조적인 관계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통하여 키워지고 강조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14. 행동을 위한 권고는 노인과 발전, 노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라고 하는 3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의 진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요 방향은 고령화 세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한 정책의 형성과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고령화 세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은 사회개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복지의 질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공식·비공식 제도의 지속 가능성으로 측정된다.

15. 세계적인 의제들 안으로 고령화를 주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어진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인권을 위한 여타 체제와 고령화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특정한 정책들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인구고령화는 세계화와 같은 정도로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 범 세계적인 힘이다. 노인 자신들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향상을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들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의 잠재력을 미래발전의 근거로 끌어안는 적극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II. 행동을 위한 권고

A. 주요 방향 I: 노인과 발전

16. 노인들은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 어떠한 개인도 발전의 혜택을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

회 경제적 변화와 아울러 인구고령화는 노인들을 사회경제적 발전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노인을 세력화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 도시화, 확대가족에서 소규모 유동적인 가족으로의 변화,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기술에의 접근부족 및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노인들을 발전의 주류에서 소외시키고 그들의 유용한 경제·사회적 역할을 박탈하며 전통적인 그들의 지원 자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17.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유지함으로써 적법한 과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개발선언과 행동계획에 있는 원칙들 중의 하나는 정부가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새천년 정상회의는 1990년대에 국제회의들을 통하여 제시된 빈곤해소와 사회적·인도주의적인 목표의 이행이 장기적인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 코펜하겐 사회개발 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1995.3.6-12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음. 선언은 인류가 빈곤, 실업, 사회분열과 같은 사회문제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개발의 원칙, 목표와 10대 공약 사항을 담고 있음. 행동계획은 선언에 열거된 원칙을 따르고 10

대 공약사항인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통합, 남녀평등, 교육 및 보건서비스 확충, 아프리카지역의 사회개발, 구조조정에 있어 사회개발 목표달성, 재원동원, 국제협력 증진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조치사항들을 담고 있음.

※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는 2000.9.6-8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유엔새천년선언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RES/55/2, 2000.9.18)을 채택하였음.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가치와 원칙으로서 자유, 평등, 연대, 관용, 자연존중, 책임공유를 들고 있음. 아울러, 추진 목표로서 평화.안전.군비축소, 개발과 빈곤해소, 환경보호, 인권.민주주의.선정, 취약 계층보호, 아프리카 지원, 유엔기능강화를 담고 있음.

18. 정책결정자들은 노동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적절한 경우, 연금제도가 건전한 재정적 토대에 놓여지도록 다방면에서 개혁 전략이 이행되어야 한다.

과제 1: 사회와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

19.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노인들에 대한 일체의 배제와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노

인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여는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종종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가족구성원 보호, 생산적이고 생계를 위한 일, 가구 살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역할들은 미래의 노동력의 준비에도 기여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각 세대들의 - 특히 여성들- 무보수 노동의 기여를 포함한 이러한 모든 기여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0.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가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개인의 복지 향상과 유지에 기여를 한다. 노인단체는 옹호를 통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다세대간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1. 목표 1: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기여의 인식

행동들

(a) 인권협약과 기타 인권협정 -특히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와 관련 있는- 의 이행을 증진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

(b) 가정,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노인들의 공헌을 인식하고 장려하고 지원함

(c) 노인들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프로그램 및 지원을 제공함

(d) 노인들이 상부상조 활동 및 세대간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접근을 제공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함

(e) 모든 연령층에게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는 자원봉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의 참여기회가 거의 없거나 참여를 못하였던 노인들의 참여를 촉진함

(f) 노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과 무보수 노동을 포함한 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증진함

(g) 노인들은 장애나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공헌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함

(h)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며, 모든 생애단계에서 존엄을 지니고 살 권리를 존중함

(i) 사용자들 사이에 노인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의 생산적인 능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증진하고, 노인들의 자각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함

(j) 사회적 고립과 싸우는 전략으로서 시민적 문화적 참여를

증진하고 노인의 세력화를 지원함

22. 목표 2: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행동들

(a)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들의 욕구와 관심을 고려함

(b) 노인단체가 없는 경우,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수준에서의 노인단체의 설립을 장려함

(c)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들이, 특히 여성노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과제 2: 근로와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

23. 노인들은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한 소득을 창출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업, 불충분한 고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종종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에너지와 기술을 빼앗음으로써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 개발정상회의의 코펜하겐 선언 중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목표의 증진이라는 공약³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행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은 동 정상회의 행동계획과 제24차 특별유엔총회에서 권고된 고용증진 이니셔티브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4.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의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나이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공식 경제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종종 그들로부터 적정한 근로조건과 공식경제분야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선진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의 경우 평균수명이 법정 퇴직연령이나 연금수급 연령을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나라들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경향은 종종 연령차별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층의 감소, 근로자의 고령화, 조기퇴직 경향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력적인 퇴직, 새로운 근로조건, 적응할 수 있는 작업환경, 장애노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같은 고용가능성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중요하며 그러한 정책들은 노인들이 유급고용과 기타 활동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노동시장에서 여성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 특히 비연속적인 직업경력과 가족보호의무로 인하여 야기되는 저임금, 능력개발 부족과 같이 여성이 유급 근로활동에 종사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연금형성과 기타 은퇴소득 자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와 관련하여 가정친화적인 정책의 부족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여성의 소득활동 기간 중 빈곤과 저소득은 종종 노년까지 빈곤을 수반할 수 있다. 국제행동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직업현장에서 연령의 다양성과 성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26.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고령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이 노동시장에서 젊은이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국가경제의 향상에 지속적이고 소중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근로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들의 훈련에 이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

27.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사실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완전한 퇴직을 기꺼이 미루는 것을 장려하고 시간제 근로이든 완전 고용이든 계속적으로 고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존 인센티브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관행과 정책은 노인근로자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특수한 일부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들이 노후에도 고용되어 있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건강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과 근로조건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 노동단체 및 인적자원 관리자들이 노인근로자들을 작업장에서 붙잡아 생산적인 수행을 촉진하게 하는 새로운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근로관행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8. 목표 1: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 부여

행동들

(a) 예를 들어, 노동시장정책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생산과 고용에서 높은 성장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는 것과 같은 고용증진을 거시경제정책의 중심에 둠

(b) 노인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c) 근로연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이 노후에 배제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 이러한 조치는 실업자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재통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여성노인의 참여증진, 예방에 중점을 둔 지속적인 근로관련 보건서비스,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안전과 산업보건의 증진, 기술에의 접근, 평생교육, 계속 교육, 직장 내 훈련, 직업재활과 탄력적인 퇴직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음.

(d) 장기간 실업자와 장애인- 그들이 노후에 배제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과 같은 취약계층 및 여성의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

(e) 노인들에게 소규모 및 micro 사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성차별과 같은 차별이 없이 신용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영업 활동을 증진함

(f) 비공식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소득, 생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

(g) 노인들의 고용을 증진하고, 고용상태에 있는 노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장벽을 제거함

(h) 적절한 경우, 특히 이미 얻은 연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퇴직정책 및 제도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욕구는 물론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하는 퇴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증진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로 조기 퇴직에 대한 유인과 압력을 감소시키고, 퇴직연령을 넘어 일하는데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음.

(i) 노인가족, 장애가족,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바, 근로와 보호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정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들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보호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함

(j) 예를 들면, 이미 획득한 연금에 대한 권리, 장애급여 및 건강급여가 연장된 퇴직연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퇴직연령 이후의 근로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함

(k) 특히,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능력을 유지시키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욕구를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환경과 혁신적인 사업장을 증진시킴

(l) 근로자들이 더 오래 근로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잠재적인 재정적, 건강 그리고 기타 영향들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사전에 고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m) 고령의 근로자나 구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음으로써 노인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증진시킴

(n) 정책 또는 의사 결정자들이 기업합병을 승인할 때 노인들이 젊은이들 보다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 감소 또는 실직을 당하지 않도록 노인근로자들을 고려하여야 함

과제 3: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

29.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은 젊은층의 도시 탈출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농촌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지원과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조차 없이 남겨지는 경우도 있다. 식량안보와 농업생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여성노인들은 그들의 역할이 가족부양을 위한 무보수 근로에 국한되어 있고 생존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개발도상 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의 농촌지역 노인들은 종종 기본적인 서비스와 경제적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30. 적법한 국제이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는 국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에서 해외자녀로부터 송금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은 종종 노인들과 그들의 지역사회와 지

역경제에 중요한 생명선이다. 초기 국제이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부 정부들은 노인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31. 도시환경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비하여 전통적인 확대가족망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개발도상국가의 노인들은 종종 사회안전망의 상실에 직면하며 도시의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로 인하여 특히 노인들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소외와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이주와 저개발 도시의 확장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들에서는 가난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의 도시환경은 종종 혼잡한 주거, 빈곤, 경제적 자립 상실, 가정 밖에서 생계를 버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물질적 사회적 보호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특징 지워진다.

32. 목표 1: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하부구조 개선

행동들

(a) 재정서비스와 하부구조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향상된 농업기법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고령화되는 농민의 능력을 강화함

(b) 소득창출사업이나 농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혹은 지원 및 경제적 다각화를 통하여 소규모 기업의 설립과 활성화를 장려함

(c)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용융자 및 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지방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조장함

(d) 농촌 및 오지지역에서 진행중인 성인교육, 훈련 및 재훈련을 증진함

(e)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에 농촌과 오지 사람들이 연결 되도록 함

(f) 경제적 자원에서의 평등한 접근과 관리와 관련하여 농촌과 오지지역 여성노인들의 권리가 고려되도록 하여야 함

(g) 농촌과 오지지역의 노인들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장려함

(h) 농촌과 오지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

33. 목표 2: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외 완화

행동들

(a) 장애인을 포함하여 농촌노인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입안.수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b)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함

(c) 농촌지역에서 친척이 없는 노인들-특히, 종종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긴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춤

(d)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이 금융과 하부구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함

(e) 특히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는 농촌과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지원제도를 증진함

34. 목표 3: 노인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

행동들

(a) 노인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장려함

(b) 이주노인들이 경제적 안정과 건강보장을 유지하도록 돕는 조치를 입안함

(c) 도시화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상쇄시키기 위하여 노인 회관의 설치와 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치들을 개발함

(d)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개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세대간 공동거주를 촉진하는 주택설계를 장려함

(e) 노인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지원함

(f) 적절하고 국내법에 일치하는 한 노인이주자들을 새 정착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 속에 통합하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함

(g) 노인이주자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제거함

과제 4: 지식,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

35. 교육은 활동적이고 성취적인 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중의 하나이다. 새천년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이 완전한 기초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평생동안의 접근보장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개인과 국가 양자의 생산력 확보에 절대 필요하다.

36. 현재 개발도상국에는 최소한의 문자해독과 기본적 계산능력만을 가지고 노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는 그들의 생계능력을 제한하고 그리하여 건강과 복지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국가에서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훈련은 노인들의 고용참여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37. 다양한 연령분포 구조를 가진 직장은 개인들이 기술,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한다. 이러한 종류의 상호 훈련은 집단적인 협약과 정책으로 공식화 할 수 있으며 혹은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남겨 놓을 수도 있다.

38. 교육이나 훈련 없이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노인들은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교육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들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년기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문맹률이 높게 남아 있다. 기술은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리하여 연령계층 사이에서 소외와 분리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기술적 변화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39. 훈련, 재훈련 및 교육은 근로자가 직장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인자들이다. 기술적인 조직적인 변화들은 근로자의 기술을 쓸모 없게 만들며 전에 축적한 근로경험의 가치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노동인력으로 남아있는 노인들에게 지식,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을 더 한층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고려할 때 젊은 근로자들보다 기술적인 조직적인 변화들에 대한 적응에 종종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40. 목표 1: 직업 지도 및 배치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전 생애를 통한 기회 균등

행동들

(a) 2015년까지 성인 문자해독율 수준을 50%까지 - 특히 여성 노인들을 위하여 - 향상시키고, 모든 성인들을 위한 기초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향상시킴

(b)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수 문자교육과 컴퓨터훈련을 포함하여 노인과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인력을 위하여 문자해독율, 기본적인 계산능력 및 기술훈련을 장려하고 증진함

(c) 노인근로자를 위한 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접근을 증진 시키는 정책을 이행하고, 퇴직 후에도 노인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함

(d) 여성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특히 정보와 통신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 노인들이 일상생활의 기술적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개발하고 전파시킴

(f) 노인들의 신체적인 능력과 시력의 변화를 고려하는 컴퓨터 기술과 인쇄, 오디오 기기의 설계를 장려함

(g)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의 혜택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조사연구를 장려함

(h)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에게 노인 - 특히 여성노인-

재훈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양함

41. 목표 2: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험의 이익을 인식하여
모든 연령계층 사람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의 완전한 이용

행동들

(a) 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을 완전히 활용하는 조치를 고려함

(b)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세대간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속에 기회를 제공함

(c) 노인들이 지도자, 조정자 그리고 상담가로 활동하도록 함

(d) 명백한 양성 평등적 시각을 가지고 가정, 이웃, 지역사회에서 전통적 비전통적 세대간 상호지원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

(e)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 특히, 정보기술분야에서 - 그들의 기술을 제공하도록 장려함

(f)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지식과 노인들의 잠재능력의 활용을 장려함

과제 5: 세대간 연대성

42.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 세대간 연대성은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 달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연대성은 또한 사회적 결합과 공식적 공공복지 및 비공식적 보호제도의 근거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변화하는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소득유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금, 사회보장, 보건 및 장기요양 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43. 가정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세대간 유대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현대사회생활의 지리적 이동성과 여타 압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을 하여 노인들이 재정적으로나 손자와 여타 친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데도 현저한 기여를 제공한다.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것이 언제나 노인들이 좋아하거나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목표 1: 세대간 평등과 상호이익을 통한 연대성 강화

행동들

(a) 공공교육을 통하여 고령화가 전체 사회의 문제라는 이해를 증진함

(b) 세대간의 연대성을 촉진하도록 기존 정책들의 검토를 고려하여 사회적 결속을 증진함

(c) 노인들이 사회적 자원임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간의 상호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개발함

(d) 지역사회에서 특히 모든 연령계층의 모임을 촉진하고 세대간 격리를 피함으로써 세대간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최대화함

(e) 동시에 부모, 자녀 및 조부모를 보호하여야 하는 세대의 특수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고려함

(f) 사회개발의 핵심적인 하나의 요소로서 세대간 연대성과 상호지원을 증진하고 강화함

(g) 상이한 문화와 환경에서 가족 공동거주와 독립 거주를 포함한 노인 거주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함

과제 6: 빈곤 해소

45. 노인의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빈곤투쟁은 고령화행동계획의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비록 빈곤해소 목표와 정책들에 대하여 근래에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지만, 많은 나라의 노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빈곤이 그 지방에 고유한 곳에서 평생동안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더 심각한 빈곤 속에 노년을 맞이한다.

46. 여성들의 경우 특히 계속적인 직업경력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편향성이 빈곤의 여성화에 더 기여를 하고 있다. 모든 불리한 전통과 관행은 물론 경제력 배분에서 여성 불평등과 차이, 남녀간의 무보수 노동의 불평등한 배분, 여성기업활동에 대한 기술과 재정지원 부족, 자본- 특히 토지, 융자 및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관리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 부여를 제한하여 왔으며,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시켰다. 많은 사회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이거나 미혼인 여성과 과부를 포함한 여성 가장들은 특히 빈곤의 위험 하에 있다. 특별한 사회적 보호조치가 여성- 특히 여성노인들-의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7. 또한 장애인들도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차별과 그들의 욕구를 수용할 작업장 부재로 인하여 장애가 없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빈곤의 위험 하에 있다.

48. 목표 1: 노인들의 빈곤 감소

행동들

(a) 2015년까지 극도의 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감소시킴

(b) 빈곤감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 속에 노인들을 포함함

(c) 고용, 소득창출기회, 용자, 시장과 자산들에 대한 노인들의 평등한 접근을 증진함

(d) 빈곤해소 전략과 이행 사업에서 여성노인, 후기고령노인, 장애인, 독신노인들의 특수한 욕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e) 가난한 여성노인의 욕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 적절하고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한 경우 연령과 여성에 관계된 빈곤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 검토가 연령계층과 성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기존 빈곤지표의 사용을 장려함

(f)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노력에 노인들의 기여를 증진하고 노인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특히 여성노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함

(g) 노인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들과 보조를 맞추어 국가적인 빈곤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함

(h) 빈곤해소 - 특히 노인들의 빈곤-를 위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력을 돕기 위하여 더욱 더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에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장애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능력을 강화함

과제 7: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49. 소득보장과 사회보장 조치들은 기여금을 내는가 여부와 관계 없이 고도로 구조화된 제도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도 포함한다. 그것들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함을 위한 토대의 하나이다.

50. 세계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재정적 제약과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종종 공적 사회보호(보장)제도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적절한 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적용이 제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비공식적인 가족지원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시장 충격과 개인적 불행들에 취약하다. 경제체제 전환국들은 경제변화가 모든 계층의 국민들- 특히 노인과 아동부양 가족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곳에서는 연금, 장애보험, 건강급여와 저축을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51. 여성의 빈곤화 - 특히 여성노인들 - 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회보호(보장) 조치들이 요청된다.

52. 목표 1: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금, 장애보험과 건강급여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회보호(보장)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증진

행동들

(a) 모든 사람이 노년기에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함

(b)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성평등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함

(c) 적절한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증가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근로인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d) 비공식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고려함

(e) 저 기술 노인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수 있는 고용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함

(f) 연금제도와 적절한 경우 장애보험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지급능력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함

(g) 사적연금과 보충연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장애보험에 대한 규제제도를 설치함

(h)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조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53. 목표 2: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노인들에게 충분한 최저소득을 제공

행동들

(a) 적절한 경우 무각출 연금제도와 장애급여제도의 설치를 고려함

(b) 긴급한 사안으로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
- 그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특히 혼자 살고 있거나 빈곤에 더 노출되어 있음 - 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조직함

(c) 연금제도와 장애보험을 필요한 경우 개혁할 때마다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함

(d) 연금, 적절한 경우 장애보험 그리고 저축제도에 대하여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조치를 취함

(e) 국제기구들은 - 특히 국제금융기구 - 그들의 설립취지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와 필요한 모든 국가들에게 그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특히 노인들을 위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도와주도록 요청함

과제 8: 긴급상황

54. 자연재해, 기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노인들이 특히 취약하며,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되고 음식과 피난처를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들이 취약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일차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적 구호기관은 노인들이 재화와 재건을 증진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55. **목표 1: 자연재해와 기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 기간과 그 이후 식량, 피난처,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

행동들

(a) 무력분쟁과 외국점령 하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물리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무력분쟁과 외국점령 하에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b) 정부들은 국내 강제이주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긴급구조를 보호, 지원 및 제공하도록 함

(c) 긴급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찾고 확인하며, 원조수요평가 보고에 그들의 기여와 취약성을 포함하도록 함

(d) 구호기관 직원들에게 노인들의 특수한 신체적 건강 문제와 노인들의 요청사항에 기본적인 지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e)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들이 서비스에 실제적인 접근을 하며, 적절한 경우 계획과 전달서비스도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f) 새롭고 낮은 환경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노인난민들은 종종 특별한 사회망과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g) 재난 준비, 구호대원 훈련, 서비스와 물품 제공을 포함한 재난구호계획에 있어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명백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적인 지침을 작성함

(h)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임

(i) 재난 발생 이후 노인에 대한 부정확한 방법의 재정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함

(j) 위험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긴급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및 재정적인 학대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들을 그로부터 보호함

(k) 특히 활동적인 사람들을 더 자립적이 되도록 도우며,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지역사회 보호를 장려함으로써, 난민관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이행 모든 측면에서 노인난민을 하나의 목표로 하여 포함하도록 장려함

(l) 자연재해, 여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및 분쟁 후 상황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재건과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 부담을 공유하고 그 지원을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

56. 목표 2: 비상사태 이후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재건에 노인들의 기여제고

행동들

(a) 약한 노인들을 확인하고 돕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구조와 재활사업의 제공에 노인들을 포함함

(b) 가정과 지역의 교육,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에서 노인들을 지도자로 인식함

(c) 여성노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감안하여 소득창출, 교육 프로그램, 직업활동을 포함한 재활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다시 달성하도록 지원함

(d) 이주상태와 토지, 여타 생산적이고 개인적인 자산의 몰수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법률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함

(e) 자연재해나 여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에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물품에 있어서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f) 긴급상황 이후에 노인들의 기여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적절한 경우 적용함

B. 주요 방향 II: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57. 건강은 불가결한 하나의 개인 자산이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높은 국민건강 수준은 사회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불가결하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일부 인구집단은 아직도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유병율과 사망률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아직은 건강한 장수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58. 노인들은 재활의료와 성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질병 예방과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포함한 건강 보호 및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완전한 접근은 이미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들의 독립유지, 질병의 예방과 지연, 장애치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건강 보호와 서비스는 관련 직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포함하고 노인인구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59.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로 노년에 이르기 위하여 생애에 걸친 개인적인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개인의 책임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은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들에게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의료와 재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적절한 경우 관련 대학과정과 보건의료체계에 노인병의학의 도입을 고려하면서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이외에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하면서 개인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여타 중요한 행위자로 특히 민간단체와 가족이 있다.

60.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질환의 만연에서 만성질병과 퇴행성질환의 만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학적인 변화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은 증가하는 비전염성 질환의 위협과 동시에 에이즈, 결핵과 말라리아와 같은 새로이 나타나고 다시 발생하는 질환과 싸우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61.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 수요는 적절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부재는 커다란 비용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보조기술,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 정신보건서비스,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과 지원적인 환경을 포함한 평생건강증진 정책들이 노년에 따라오는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예산절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제 1: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62.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1986년 오타와 건강증진선언에 담겨있다. 건강한 수명 연장,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 증진, 사망률과 유병률 감소,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의 목표들은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설정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접근 향상을 위하여 권고한 행동들의 이행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63. 건강증진활동과 생애에 걸친 질병예방을 포함한 보건 의료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평등한 접근은 건강한 노후의 초석이다. 생애에 걸친 관점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이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기능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도 제공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질병과 장애의 예방과 지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64.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행동들 그 이상을 요구한다. 건강은 물리적 환경, 지리, 교육, 직업, 소득,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원, 문화와 성을 포함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인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개선은 또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입법과 서비스 전달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생애에 걸친 동등한 기회는 아직 많은 분야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생애에 걸쳐

그들의 노후에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안녕에 대하여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들에 직면하므로 여성들을 위하여 노후 안녕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

65. 아동들과 노인들은 중간 연령층의 개인들보다 여러 형태의 환경오염에 더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가장 낮은 수준의 오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의학적인 상황들은 생산성을 감소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불량과 빈약한 영양섭취는 또한 노인들을 부적절한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의 건강과 활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노인의 질병, 장애와 사망률의 주요 원인들은 특히 영양, 신체적 활동과 흡연 중지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조치들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66. **목표 1: 질병의 위험과 그 결과로 노년에 잠재적 의존을 증가시키는 누적적인 영향요소 감축**

행동들

(a) 노인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 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 중에서도 빈곤해소정책에 우선 순위를 둠

(b) 적절한 경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의료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확보함

(c) 노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장애와 사망을 감소시키는 목표-특히 성별 목표-를 설정함

(d) 노년에 질병과 장애의 유발을 촉진하는 주요 환경적,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찾아내고 주의를 기울임

(e)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 신체적 활동부족 그리고 흡연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주요 위험인자, 보건교육, 예방정책 및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춤

(f) 알코올 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행동을 취하고, 모든 세대가 담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 생산품의 사용 및 담배연기에 대한 비자발적 노출을 감소시킴

(g)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며, 아동기부터 전 생애를 통하여 환경 오염원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같은 공중정보 및 건강 증진을 조직함

(h)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증진하고,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와 교육을 통하여 처방의약품의 남용을 최소화함

67. 목표 2: 노인질병 예방정책 개발

행동들

(a)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그 발생을 지연시키는 조기

개입조치들을 입안함

(b) 예방적 조치로서 성인예방접종사업을 증진함

(c) 성 인지적인 일차예방과 검진사업을 노인들에게 제공함

(d)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자기 관리를 하며 노년에 이르도록 상담과 지도를 수행하는 보건, 사회서비스, 의료 전문가들에게 훈련과 인센티브를 제공함

(e) 사회적 고립과 정신질환으로 야기되는 위험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며, 동료 상호간 봉사 및 이웃방문사업을 포함한 지역 사회활동과 상호부조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인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킴

(f) 사회적 소외와 싸우고 능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인들의 시민적 문화적 참여를 증진함

(g) 가능한 경우 모든 세대에 대한 부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국내적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강화함

(h) 비자발적인 부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추락예방사업을 이행하며, 가정에서의 화재위험을 포함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자발적 부상을 예방함

(i) 노인연령층의 질병 심화를 예방하는 정책을 안내하도록 노인들에게 공통적인 질병들에 관한 모든 수준의 통계적 지표를 개발함

(j) 신체적 활동과 스포츠를 포함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노인들이 갖거나 유지하도록 장려함

68. 목표 3: 식품 및 적절한 영양에 대한 모든 노인들의 접근

행동들

(a) 깨끗한 물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노인들의 평등한 접근을 증진함

(b) 국내적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품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달성함. 이와 관련하여, 식품과 의약품이 정치적 압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함.

(c) 생애에 걸쳐 남성과 여성에게 특수한 영양적 요구가 충족 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기부터 생애에 걸친 건강하고 적절한 영양을 증진함

(d) 그 중에서도 국가적인 영양목표 개발을 통하여 되도록이면 지역적인 식량에 근거하여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필수 및 미량 영양소의 결핍증을 예방하는 균형 있는 식사를 권장함

(e)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영양결핍과 그에 수반하는 질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f) 물,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물의 적절한 섭취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특별한 영양적 욕구에 대하여 노인들, 일반 공중, 비공식 보호자들에게 교육을 시킴

(g) 식사를 방해하고 영양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공급 가능한 치과서비스를 증진함

(h) 모든 보건과 의료관련 근로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노인의 특별한 영양학적 욕구를 포함함

(i) 병원과 여타 보호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접근 가능한 영양과 식품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함

과제 2: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69.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와 재활에 대한 투자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는 기간을 확장시킨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으로부터 일차보건의료의 제공, 급성질환치료, 재활, 만성건강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치료,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노인들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재활, 고통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고식적 진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보호이다.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 주; 고식적 진료(Palliative care)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적인 처치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완전 보호를 의미함. 다시 말하면, 질병의 고통과 여타 징후를 관리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70.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와 그 나라에서 자립과 자결의 정신으로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유지가 가능한 비용으로, 주민의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인과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실용적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근거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이다. 노인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 법률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그들의 치료가 젊은이들의 치료보다 가치가 적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서 연령차별과 연령관련 장애차별에 마주칠 수도 있다.

71. 우리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곤국가를 괴롭히고 있는 공중 보건문제들 - 특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여타 전염병과 같은-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Agreement)이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 국제적 행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72. 지적재산권 보호는 신약의 개발을 위하여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협정이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증진과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정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73. 정부들은 모든 세대를 위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분야 사이의 협력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보호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그러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인 공중보건체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4. 목표 1: 노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건의료 접근을 보장 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또는 언어적 장애를 포함한 여타 이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철폐

행동들

(a) 보건과 재활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가난한 노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며, 기본적인 의약품 치료와 여타 치료적 조치를 포함하여 농촌이나

오지지역과 같은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자원의 분배를 증진함

(b) 그 중에서도 사용자 요금의 인하나 폐지, 보험제도 및 여타 재정지원 조치로 농촌이나 오지지역에 사는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평등한 의료접근을 증진함

(c) 기본적인 의약품치료와 여타 치료적 조치에 대한 가능한 접근을 증진함

(d) 보건과 재활 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용과 선택에 대하여 노인들을 교육하고 능력을 부여함

(e) 연령과 기타 형태의 차별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일차 보건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함

(f) 노인들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에서 연령차별과 기타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g) 농촌지역에서의 지리적인 자원적인 한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원격진료와 원격 교육과 같은 기술을 이용함

75. 목표 2: 노인욕구에 대응하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과 강화 및 그 과정에서의 노인참여증진

행동들

(a)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립함

(b) 노인들에게 보건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지원함

(c)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경우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전통의학을 포함시킴

(d) 기본적인 노년학과 노인병학에 대하여 일차보건의료 사업자와 사회사업가들에게 교육을 시킴

(e)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치료제-특히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동원하는 모든 수준의 조치와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세계보건기구가 보건연구분야에서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을 함.

76. 목표 3: 노인욕구를 만족시키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발

행동들

(a) 적절한 수준에서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와 재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제도를 개발함

(b) 지역 보건사업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평가기준을 결정하는 지역사회 개발전략을 이행하며, 동 기준은 노인들의 기여를 포함하여야 함.

(c) 일차보건의료, 장기요양치료, 사회서비스 및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의 조정을 향상시킴

(d) 고식적 진료의 제공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에 그를 통합함. 이 목적을 위하여 훈련과 고식적 진료의 기준을 개발하고, 고식적 진료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들에게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접근을 장려함.

(e) 노인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보건수요에 자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의료, 급성치료, 재활, 장기 및 고식적 진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보호 하에 모든 범위의 서비스 입안 및 조정을 증진함

(f) 노년학적인 특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차보건의료 및 사회보호서비스와 동 서비스와의 조정을 향상함

77. 목표 4: 노인의 개발참여 및 일차보건서비스와 장기요양치료 서비스 강화

행동들

(a)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및 재활사업의 입안, 수행 및 평가에 노인을 포함시킴

(b) 보건의료와 사회적 보호 제공자들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노인들을 완전히 참여시키도록 장려함

(c) 노인들의 자기 보호를 증진하고, 건강과 사회 서비스에서 노인들의 힘과 능력을 최대화시킴

(d) 건강정책의 형성에서 노인들의 욕구와 인식을 통합함

과제 3: 노인과 에이즈

78. 노인의 에이즈 감염이 그들에게 발생하는 기타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에이즈 진단은 어렵다. 노인들은 단지 일반적으로 공중캠페인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79. 목표 1: 감염노인과 감염되거나 생존한 가족을 돌보는 노인 모두를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향상

행동들

(a) 노인들의 에이즈 감염정도 평가를 위한 에이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을 확대함

(b) 노인 보호자들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자료 모두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여 에이즈 환자의 노인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80. 목표 2: 에이즈 감염노인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보

호기술 관련 훈련, 치료, 의학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제공

행동들

(a) 적절한 경우 공중보건과 예방 전략을 지역의 전염병을 반영하도록 개정함. 일반 국민을 위한 에이즈 예방과 위험에 관한 정보는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함.

(b) 노인보호자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노인보호자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함

(c) 에이즈 치료와 지원전략이 에이즈에 감염된 노인들의 욕구를 감안하도록 함

81. 목표 3: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부모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도록 노인들의 기여를 증진하고 인식함

행동들

(a) 유엔에이즈선언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노인들-특히 보호제공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에이즈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함

※ 유엔에이즈선언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Global Crisis, Global Action)은 2001.6.23-29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에이즈특별총회에서 채택되었음. 에이즈 감염감소,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지도력, 감염자 인권, 감염 위험의 최소화, 에이즈 고아, 사회경제적 영향의 최소화, 연구와 개발, 분쟁지역의 에이즈, 자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b) 유엔새천년선언문에 따라 노인들이 자식들과 손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자들에게 현물지원, 보건의료 및 용자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함

(c) 에이즈문제와 관련하여 아동, 청년 및 노인과 함께 일하는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촉진함

(d) 모든 국가-특히 에이즈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노인들의 공헌을 더 잘 이해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연구의 협력을 장려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널리 전파하도록 함

과제 4: 보호 제공자와 보건전문가의 훈련

82. 노인과 함께 일하는 모든 보건전문가들을 위하여 노인병학과 노년학 분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보건과 노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긴급히 필요하다. 또한, 비공식 보호제공자들도 노인 보호에 관한 정보와 기본적인 훈련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83. 목표 1: 노인 욕구와 관련된 보건전문가와 준 전문가들을 위한 향상된 정보와 훈련 제공

행동들

(a) 노년학과 노인병학을 포함하여 노인들에게 서비스 및 보호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회적 보호 전문가들, 그리고 비공식 보호제공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가-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함.

(b) 고령화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 안녕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보건 및 사회적 보호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c) 학생들의 노인병학과 노년학 등록확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포함하여 노년학과 노인병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확충함

과제 5: 노인들의 정신건강 욕구

84. 세계적으로 정신건강문제는 장애와 삶의 질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정신건강문제는 분명히 불가피한 노화과정의 한 결과는 아니며,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 수의 현저한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상실과 삶의 변화는 종종 정신적인 질환을 수반할 수 있으며, 그 질환들은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아예 치료를 못 받게 될 수 있으며 혹은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수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85. 그러한 질병들을 대응하는 전략은 의약품 복용, 심리 사회적 지원, 인식훈련 프로그램과 보호 가족, 직원 및 특수한 입원보호 구조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

86. 목표 1: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초기개입, 치료서비스와 관리 제공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신 건강 보호서비스 개발

행동들

(a) 전문가들과 비공식 보호제공자들을 위한 진단절차, 적절한 투약, 심리치료 및 교육을 포함하여 노년기 정신질환의 예방, 적시 발견 및 치료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함

(b) 질병의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경우 알츠하이머와 그와 관련된 질환들의 질 평가 및 진단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함. 이러한 질환에 대한 연구는 환자, 보건전문가 및 보호자의 욕구에 맞추는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근거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함.

(c) 알츠하이머와 여타 치매 관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기간동안 집에서 살며 그들의 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d) 자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 가족 및 기타 보호자들을 위한 휴식 보호를 제공함

(e)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재통합을 돕는 심리 사회적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함

(f) 불필요한 시설수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발함

(g)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안전과 치료를 제공하고 개인의 존엄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설을 설치함

(h) 정신질환의 증상, 치료, 결과 및 진단에 관한 공중 정보를 증진함

(i) 장기요양치료 시설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

(j)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모든 정신질환과 우울증의 발견 및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함

과제 6: 노인과 장애

87. 손상과 장애의 발생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여성노인들은 그 중에서도 평균수명과 질병 감염에서의 남녀차이와 생애에 걸친 성

차별로 인하여 노년기 장애에 특히 취약하다.

88. 손상과 장애의 영향은 종종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악화된다. 그 고정관념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하거나, 장애인들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9. 모든 노인들을 위하여 개입과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고 독립을 증진하는데 불가결하다.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화는 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요소이다.

90. 목표 1: 장애노인의 전 생애에 걸친 최대한 기능적 능력 유지 및 완전한 참여 증진

행동들

(a) 장애노인 문제를 국가정책 의제에 포함하고 장애 관련 사업조정기관들이 장애노인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b) 보건,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남녀평등과 연령을 감안한 국가적 지역적 정책, 입법, 계획과 사업들을 개발함

(c) 장애노인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d) 장애의 발생원인에 대한 교육과 생애에 걸쳐 장애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업을 개발함

(e)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 친화적인 기준과 환경을 만듦

(f) 장애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주택 선택사항의 개발을 장려하고, 독립을 권장하며,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상업 지역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 교통 및 여타 서비스를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g)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장애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장애노인을 위한 재활, 적절한 보호 및 보조기술의 제공을 장려함

(h) 가입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차별이 없이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을 포함한 모두에게 의약품과 의료기술에의 접근성을 증진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그에 대한 공급가능성을 촉진함

(i)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자조 단체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함

(j)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고 유급 근로나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사용자가 받아드리도록 장려함

C. 주요 방향 Ⅲ: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91. 사회개발을 위하여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을 증진하는 것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적인 목표들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제24차 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에서 새롭게 되고 강화되었다. 그 공약은 새천년선언문에 설정된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정치체제와 선정을 핵심적이며 구조적인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든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 의존성·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 공적 개발원조와 부채 감경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부원조 증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 선진국 시장에 대한 개발 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접근 향상, 국제적인 금융 동요의 부정적인 영향 축소. 이와 같은 측면과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의 여타 측면,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실현하는 것은 이 행동계획에서 합의된 목표와 정책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제24차 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 2000.6.26-7.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1995.3월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코펜하겐 선언 및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그 후속조치를 논의함.

92. 사회개발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자원의 동원은 2002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요소이다. 1982년 이후로

기존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점차적으로 주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적절한 국가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인구변화나 여타 요인과 같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제도에 관한 새로운 도전과 결합하여 많은 나라에서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제도의 재정을 위협하게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증가하는 부채부담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경제체제 전환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과도한 부채는 사회개발을 증진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93.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새천년선언문에 담겨있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현재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추정에 주목한다. 새천년선언문에 담겨있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새로운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과 선정을 펼치고, 법에 의거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국내자원을 동원하고, 국제적인 자금을 끌어오며, 개발의 견인차로서 국제교역을 증진하며,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재정적 기술적 협력, 지속 가능한 부채조달 및 외부적인 부채구제를 증가시키며, 국제적인 통화.재정.무역 제도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약속한다.

94. 또한,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 청년과 노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결집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약속도 중요하다. 모든 노인들은 어떠한 상황하에 있던지 그들의 능력을 높여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일부 노인들은 높은 정도의 신체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반면에, 대부분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싶어하며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노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그들이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깨끗한 물과 적절한 식품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동시에 생애에 걸친 개발과 독립을 강화하며, 호혜와 상호의존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적 제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들은 위와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 시민사회와 노인들 자신이 참여하는-을 조장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과제 1: 주택과 주거환경

95. 주택과 주거 환경은 주택유지의 재정적 부담, 주택의 중요한 정서적 심리적 안정성과 같은 접근가능성과 안전과 같은 요소 때문에 노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좋은 주택은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노인들이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과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요소이다.

96. 개발도상국과 일부 경제체제 전환국의 경우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도시화와 주택과 서비스가 부족한 비 도시 지역에서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확대가족의 전통적인 환경보다는 고립 속에서 늙어가고 있다. 혼자 남겨져 그들은 종종 적절한 교통과 지원 제도가 없이 지내고 있다.

97. 선진국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환경조성과 적절한 교통수단의 제공이 또한 증가하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주택개발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수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가족들을 위하여 설계되고 있다. 교통은 농촌지역에서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가면서 점점 더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되는데 종종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이 이사를 가거나 배우자를 사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주택에 계속 살게 된다.

98. **목표 1: 노인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며 가능한 주택 선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노화 증진**

행동들

- (a) 연령-통합적인 지역사회의 개발을 증진함
- (b)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여러 분야의 노력을 조정함
- (c) 다세대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교통, 보건, 위생

및 안전과 같은 지역사회의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d)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사업을 지원함

(e) 노인들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형평성 있는 할당을 촉진함

(f) 주거환경, 장기요양치료 및 사회적 교류기회의 통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과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연계함

(g) 연령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주택설계를 장려하고, 공공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함

(h) 노인,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선택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

(i)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그들의 보호와 문화적 욕구를 고려하도록 함

(j)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주택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함

99. 목표 2: 특히 장애인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 설계를 증진

행동들

(a) 새로운 도시공간은 기동성과 접근성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보장함

(b) 기술과 독립적인 주거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재활서비스의 채택을 증진함

(c) 주택과 공공 공간의 설계를 통하여 공동거주와 다세대간 동거를 위한 수요에 부응함

(d) 노인들이 이동성과 접근성에 장애가 없는 주택을 만드는 것을 지원함

100. 목표 3: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 수단의 제공증진

행동들

(a)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효과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증진함

(b) 도시지역에서 거주지 인근 사업과 서비스와 같은 공적 사적 대체교통 수단의 증가를 촉진함

(c) 노인 운전사의 훈련과 평가, 안전한 도로의 설계 및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요리서비스 차량 개발을 장려함

과제 2: 보호 및 보호제공자 지원

101. 노인보호 혹은 노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가족, 지역사회에 의하여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 제공되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는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예방, 보호, 지원 및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이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예방, 치료 및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적 자원과 사회적 하부구조를 설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제공 제도는 이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02. 공식적인 보호정책이 잘 개발된 나라에서조차 세대상호간 유대와 상호 의존은 대부분 보호가 아직도 비공식적인 것을 지켜주고 있다. 비공식적인 보호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보호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늙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이상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보호자에게 보상이 없는 가족보호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비공식 보호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비용은 이제는 인식되고 있다. 여성보호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부재, 사라진 승진 및 저소득 때문에 낮은 연금기여의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일과 가사의무를 균형 시키려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상황은 특히 여성에게 동시에 아동과 노인 보호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103. 세계의 많은 지역 - 특히 아프리카 - 에서 에이즈 전염병은 이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노인들에게 에이즈에 걸린 자녀와 손자들 그리고 에이즈로 고아가 된 손자들을 보호하는 추가된 부담을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성인 자녀가 자신들의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더 정상적인 때에조차 많은 노인들은 예상치 않게 병약한 자녀를 돌보는 책임이나 손자들을 돌보는 유일한 부모 역할의 과제를 맡고 있다.

104.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많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되어왔다. 때때로 내재하는 논리는 가족이 대부분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 지역사회 보호가 수용보호 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예상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었다.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가족 보호자들은 과중한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지역사회 보호제도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곳에서조차 종종 빈약한 자원동원과 조정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로 수용보호는 병약한 노인이나 보호자들이 더 선호하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에 비추어, 가족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제공 가능한 보호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노인들이 자신들의 욕구 평가와 서비스 전달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05. **목표 1: 노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및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 제공**

행동들

(a) 지역사회에 기초한 보호와 가족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함

(b) 병원입원과 요양원 입소의 가능한 대체수단으로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질 높은 보호와 지역사회에 기초한 요양보호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킴

(c) 훈련, 정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제도를 통하여 보호제공자들을 지원함

(d)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그것이 상실되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노인들에게 지원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

(e)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보호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촉진함

(f) 인식장애를 지닌 사람을 위한 고령의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함

(g) 공식적인 보호 환경에서 질 높은 보호가 제공되도록 기준과 제도를 세우고 적용함

(h)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 특히 증가하고 있

는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
를 개발함

(i)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들의 자립을
고양하며, 질 높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가능하거나
희망하는 한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

(j)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더 나은 조화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과 남성간 보호책임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보호 및 가족보호에 대한 지원 제공을 증진함

106. 목표 2: 노인 - 특히 여성노인 - 의 보호자 역할 지원

행동들

(a) 보호를 제공하는 노인과 그 보호 하에 있는 가족 양자를
위한 휴식 서비스, 조언 및 정보를 포함한 사회적 지원제공을
장려함

(b)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 특히 여성노인 - 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임

(c) 손자를 기르는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을 다시 강화함

(d) 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 보호제공자들
을 고려함

과제 3: 유기, 학대 및 폭력

107. 노인에 대한 유기, 학대 및 폭력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재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지리적 영역에서 발생한다. 노화의 진전은 치료능력의 감퇴를 수반하여 노인 학대피해자는 충격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회복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 충격의 영향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도움을 청하기를 꺼려하게 만들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노인에 대한 학대, 소비자 사기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및 수용시설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보호자들에 의한 잠재적인 유기, 학대 혹은 폭력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8. 여성노인들은 차별적인 사회적 태도와 여성인권의 미 실현으로 인하여 더 큰 신체적 심리적 학대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해로운 전통과 관례는 여성노인들을 대한 학대와 폭력 - 종종 빈곤과 법률적 보호의 부족으로 인하여 악화된 - 을 초래하고 있다.

109. 여성의 빈곤은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부재, 신용대부.토지 소유.상속을 포함한 경제적 자원접근 부족,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접근 부족,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빈곤은 또한 여성들을 성적인 착취에 노출되

어 있는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

110. 목표 1: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

행동들

(a) 노인학대와 그의 다양한 성격 및 원인에 대하여 언론이나 여타 인식고양 캠페인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을 민감하게 하고 일반공중을 교육시킴

(b) 여성의 건강 및 안녕에 해로운 과부의식을 철폐함

(c) 노인학대를 근절하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적 노력을 강화함

(d) 노인과 관련된 해로운 전통적 관습을 철폐함

(e) 지역사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노인학대를 대응함에 있어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사이에 협력을 장려함

(f) 유기, 학대 및 폭력 - 특히 긴급상황하에서 - 에 대한 공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그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여성노인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함

(g)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원인, 성격, 정도, 심각성 및 결과에 관하여 더 많은 조사연구를 장려하고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널리 전파함

111. 목표 2: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

행동들

(a) 학대의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와 학대자의 재활제도를 도입함

(b) 의심이 있는 노인학대를 보고하도록 일반 공중뿐만 아니라 보건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을 장려함

(c) 보건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알려주도록 장려함

(d) 보호전문직 훈련에 있어서 노인학대의 처리법을 포함함

(e) 노인들에게 소비자 사기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안내 프로그램을 입안함

과제 4: 노화의 이미지

112.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불가결한 측면의 하나이다. 평생동안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권위, 지혜, 위엄과 자제에 대한 인정은 역사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정상적인 존경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어떤 사회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으며, 노인들은 건강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욕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소모품으로 어울리지

않게 묘사되고 있다. 비록 건강한 노화가 노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점차 중요한 과제로 되었지만, 보건의료, 연금 및 기타 서비스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공공의 초점은 때때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여 왔다. 노인들을 매우 중대한 공헌을 하는 매력적이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개인들로 보는 이미지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여성 노인들은 특히 오도된 부정적인 고정관념 - 그들이 제공하거나 가지고 있는 공헌, 강함, 풍부한 자원, 인간성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묘사하는 대신에 종종 약하고 의존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 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타적인 관행을 강화한다.

113. 목표 1: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여타 중요한 공헌에 대한 공중의 인식 향상

행동들

(a) 편향된 선입관과 신화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 결과로 존경, 감사, 위엄과 민감성을 가지고 노인들을 대우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이 있는 정책구조를 개발하고 널리 증진함

(b) 대중매체가 장애노인을 포함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지혜, 강함, 공헌, 용기 및 풍부한 자원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조장하도록 장려함

(c) 교육자들이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공헌을 교육과정에서 인정하고 포함시키도록 장려함

(d) 대중매체가 고정관념의 묘사를 극복하고 인류의 모든 다양성을 밝게 비추도록 장려함

(e) 대중매체가 변화의 선구자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개발전략에서 노인의 역할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함

(f) 대중매체가 노인들의 활동과 관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 의한 공헌을 촉진함

(g) 대중매체와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가 직장에서의 연령주의를 피하고 노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장려함

(h) 여성노인들의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함

III. 이행과 후속조치

114.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은 앞으로 발생할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기술과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 외에 고령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국제적 지원이 중요하며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성이 있다.

115. 행동계획의 이행은 그 중에서도 인간존엄,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종교적, 민족적인 가치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존중에 근거한 노인들의 사회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그리고 정신적인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행동

116. 정부는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광범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첫 단계는 고령화와 노인들의 관심사항을 국가적인 발전 계획과 빈곤해소전략에서 주류화하는 것이다. 사업혁신, 재정적 자원의 동원, 그리고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동시에 착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국가적 국제적인 모든 수준에서의 선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의 모든 부문사이에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행동계획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117. 민간단체의 역할은 국제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후속조치에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는데 중요하다.

118. 적절한 경우 고령화 관련 기관과 국가위원회의 설치 같은 행동계획의 제도적 후속조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단체와 같은 관련 시민사회분야의 대표를 포함한 고령화 국가위원회는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고령화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자문과 조정기구로 이용될 수 있다.

119. 기타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은 효과적인 노인단체들, 고령화에 대한 훈련과 조사활동, 정책의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성과 연령에 특수한 정보의 편집과 같은 국가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한다. 이행의 진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또한 소중하며, 자치적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는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 노인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에 의한 자원의 동원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적인 행동

120. 우리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이 무역, 투자, 자본이동과 정보 기술을 포함한 기술향상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성장과 전 세계에 걸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심각한 금융위기, 불안정, 빈곤, 사회 내부와 사회 사이에 배제와 불평등을 포함한 심각한 도전이 존재한다. 일부 경제체제전환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 - 특히 최빈곤국가들 - 이 세계경제에 통합하고 완전히 참여하는데 심각한 장애들이 남아있다. 만약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혜택이 모든 나라들에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들과 전체 지역에서 증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경제로부터 소외되어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나타난 기회의 잠재력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완전

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여야 한다.

121. 세계화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과 경제체제전환국들은 그러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는 완전히 포괄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국가적인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책과 조치들이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들이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아래 입안되고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122. 개발도상국, 최빈곤국가, 경제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적인 발전노력을 보충하고 동 국가들이 이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하다. 그 중에서도,

- 국가적인 발전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제적인 통화, 금융 및 무역제도의 조화.관리.일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관리를 개선하고 발전증진을 위한 유엔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모든 관련 행정부처와 기관들 사이의 협조증진을 강화하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유사하게 우리는 새천년선언문의 발전목표인 지속적인 경제 성장, 빈곤해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운영적인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을 조정하는 정책 및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진행중인 중요한 국제금융구조개혁 노력은 더 많은 투명성과 개발도상국 및 경제체제전환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지고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한 자원조달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 구조의 중요한 구성인자로서 국가발전노력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건전한 국내금융 분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 적절한 경우 부채교환사업과 같은 부채감소를 위한 현재의 질서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들의 부채를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국내적인 국제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최빈곤국가, 저소득 개발도상국가 및 중간소득개발도상국가들의 부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협력된 행동을 요구하면서,
- 개발도상국가들이 새천년선언문의 내용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적개발원조와 여타 자원의 실질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직 공적개발원조로서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그리고 최빈곤국가들에게는 0.15%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며, 개발도상국가들은 공적개발원조가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발전을 이루도록 장려를 하여야 한다.

123. 향상되고 집중된 국제적인 협력과 선진국과 국제개발기구들의 효과적인 약속이 행동계획의 이행을 높이고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와 지역의 개발은행들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이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돕는 노력의 일부로서 노인들을 발전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동 사실을 고려하도록 대출과 원조관행을 점검하고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124. 마찬가지로 고령화를 국가적 수준을 포함하여 각자의 사업에 통합하려는 유엔의 기금과 사업에 의한 약속도 중요하다. 개발도상국가의 고령화 관련 능력개발과 훈련을 특별히 증진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은 지극히 중요하다.

125. 고령화 관련 국제협력의 기타 우선 순위는 적절한 경우 소득창출 사업설립과 정보전파와 같은 정책과 사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험, 최선의 사례, 연구자, 연구결과 및 자료수집의 교환을 포함하여야 한다.

126. 유엔최고관리자조정위원회는 그 의제로 유엔기구내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광범위한 이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령화 세계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유엔에 설치된 연락처는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책임을 맡을 유엔내 조직적인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127. 유엔의 고령화 관련 연락처로서 경제사회국의 고령화사업 (programme on ageing)이 정책 개발과 이행의 지침입안, 발전의제에 고령화의 주류화 주창, 시민사회와 민간분야사이의 대화추진, 정보 교환 등을 포함하여 행동계획을 촉진하고 증진할 것이다.

128. 유엔의 지역위원회들은 행동계획을 지역적 차원의 행동계획으로 전환시킬 책임이 있다. 그들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고령화 관련 행동의 이행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기관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역적 차원의 민간단체들도 행동계획을 증진하려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조사연구

129. 모든 국가 - 특히 개발도상국가 -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다양하며 특수화된 조사연구를 장려하고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령과 성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한 조사연구는 효과적인 정책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행동 계획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행동계획에 정의된 권고와 행동의 이행을 적절하게 촉진하는데 있다.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제공은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행동을 위한 권고를 채택하는데 불가결하다. 또한 적절한 경우 핵심적인 지표와 같은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평가 도구를 고안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기의 정책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30.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연구는 또한 고령화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그것은 고령화 관련 국제적인 조사연구의 조정을 증진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적인 모니터링, 검토 및 개정

131. 회원국의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성공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 필요하다. 정부들은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검토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사이의 정기적인 검토결과의 공유는 귀중하다.

132. 사회개발위원회는 후속조치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의 평가를 책임진다. 위원회는 인구 고령화의 다른 차원들을 현재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그의 업무에 통합시켜야 한다. 검토와 평가는 세계회의관련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위하여 불가결하며, 그를 위한 방법은 가능한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12.16 유엔총회 (결의 46/91)에서 채택되었다.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독립(Independence); 노인들은

-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Participation); 노인들은

-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Care); 노인들은

-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

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

구 하여야 한다.

-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Dignity); 노인들은

-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